

5-다-3. 졸업생의 취업 현황(특수대학원)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원

【공시시기】 : 2023년 8월

【공시내용】 :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2년 8월 학위취득자 2022. 10. 1., 2023년 2월 학위취득자 2023. 4. 1.)

기준연도	졸업연도	단과대학	학과(전공)	구분	학과특성	석사학위							
						학위취득자	졸업자 현황						미상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유학생	취업불가능자	기타	
	2022년 8월												
	2023년 2월												
	합계												

■ 검증사항

【학과별 학위취득자 합계】 : <5-가-3>, <5-나-3>의 석사학위 취득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학과별 진학자 합계】 : <5-나-3>의 학과별 진학자(석사)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학위취득자】 : ①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수

② 학위취득자 = 취업자+진학자+입대자+무직+미상

※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

【취업자】 : 2022년 8월 졸업자는 2022. 10. 1. 기준, 2023년 2월 졸업자는 2023. 4. 1. 기준 취업한 자

※ 취업자의 정의: 조사기준일(2022. 10. 1., 2023. 4. 1.) 당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취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아래와 같은 경우 무직자수로 포함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교내취업자: 단기 교내 취업자(1년 미만), 교내취업자 중 최저임금 이하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취업자에서 제외
- 해외취업자: 주15시간미만 전일제 근무자, 단기해외취업(91일 미만) 및 해외연수자 제외

【진학자】 :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진학상황을 입력하되, 대학원 진학자는 물론, 편입자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재진학자, 해외유학자를 모두 포함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통해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진학자로 인정함

※ 제외: ㉠ 해외 어학연수자는 무직임. 그러나 해외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간주함

㉡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에 등록된 자는 특정 학점 인정 및 취득이 목적이므로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입대자】 : 조사기준일(2022. 10. 1., 2023. 4. 1.) 당시 입대자

【미상】 : 조사기준일(2022. 10. 1., 2023. 4. 1.) 당시 정확한 취업구분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